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14
----------	-------

제출년월일 : 2020. 2.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의 불부합 부분 변경 및 일부 조항의 세분화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관련 일부개정(안 12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일부개정(안 제13조)
- 현수막 지정계시대 등 위탁 관련 일부개정(안 18조)
- 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 · 지도 · 감독 조항 추가(안 18조의2,3)
- 게시시설 위탁의 해지 조항 추가(안 18조의4)
-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부 변경(안 제25조 별표6)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12. 16. ~ 2020. 1. 6.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 불임 1 >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⑥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화상회의·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업체·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시시설관리”를 “제시시설”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5조의2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기술 보유 정도
-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5.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3 및 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제시시설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지정제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지도·검사 결과 지정제시대 운영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과태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만원
45만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디자인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디자인과장 윤 윤 규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미관팀장 원 종 태
	담당자 성명·전화	김 애 릴 (행정 2402)

< 복임 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u>영 제32조에 따른 안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안산시 경관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u></p>	<p>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u>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u></p>
<p><u>〈신 설〉</u></p>	<p><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신 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1.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 조명 · 청소년 · 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u>2. 국어 ·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 조명 · 청소년 · 여성 등의 분야 전문가</u>  <u>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신 설〉</u></p>	<p><u>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 <신 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신 설>

⑥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신 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신 설>

③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화상회의·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 또는 벽보지정계시판(이하 "계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

제18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 -----

-----

-----

-----

-----

-----.

----- 법인

하는 업체 · 법인 · 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 단체 -----  
-----  
-----.

② 계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계시시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 ·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 (생 략)

<신 설>

제5조의2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18조의3(계시시설 수탁자의 지도 · 감독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지정계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업무의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 지도 · 검사 결과 지정계시대 운영에 위법 · 부당한 사항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설>

제18조의4(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 <삭 제>

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호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별표 6]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비고
가. 1회 위반 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u>30만 원</u>	
나. 2회 연속 위반 한 경우		<u>50만 원</u>	
다. 3회 연속 위반 한 경우		100만 원	

[별표 6]

5. -----

위반 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비고
가. 1회 위반 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u>25만 원</u>	
나. 2회 연속 위반 한 경우		<u>45만 원</u>	
다. 3회 연속 위반 한 경우		100만 원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14
------------	-------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6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는 주관적 평가 항목으로 선정 과정에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자 삭제함.

## 주요골자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조건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를 삭제함.(안 제18조의2제5호)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u></p> <p><u>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기술 보유 정도</u></p> <p><u>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u></p> <p><u>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u></p> <p><u>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u></p> <p><u>5.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u></p> <p><u>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u>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u></p> <p><u>-----</u></p> <p><u>-----</u></p> <p><u>-----</u></p> <p><u>-----</u></p> <p><u>1. ~4.(개정안과 같음)</u></p>	<p><u>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u></p> <p><u>-----</u></p> <p><u>-----</u></p> <p><u>-----</u></p> <p><u>-----</u></p> <p><u>-----</u></p> <p><u>&lt;삭 제&gt;</u></p> <p><u>5.(개정안 제6호와 같음)</u></p>